

# 2022년도 유아수당제도 개정의 안내

**2020년10월지급분부터 유아수당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중요한 2가지의 알림입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특례급부지급에 관계되는 소득상한한도액이 정해졌습니다**  
 ⇒ 소득상한한도액을 넘을 경우,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수급자격이 소멸됩니다.

**☆ 현황서류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 매년6월에 제출하던 현황서류가 원칙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제출이 필요한 일부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뒷면 (2) 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변경사항의 상세>

### (1) 소득제한한도액 · 소득상한한도액에 관하여

**2022년10월지급분부터,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분의 소득이 아래의 ②이상의 경우, 유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소멸이 됩니다】**

※ 아동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게 되어진 후에 소득이 ②를 밑돌 경우, 다시 인정청구서의 제출 등이 필요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을 양육하고 계시는 분의 소득이 아래 표의 ① (소득제한한도액) 미만의 경우, 아동수당을, 소득이 ①이상 ② (소득상한한도액) 미만의 경우, 법률의 원칙에 따른 특례급부 (아동 1인에 대하여 월액일률5,000엔) 을 지급합니다.

	①소득제한한도액		②소득상한한도액	
	소득액 (만엔)	수입액의 기준 (만엔)	소득액 (만엔)	수입액의 기준 (만엔)
부양친족등의 명수 (괄호는 예)				
0인 (전년도에 유아가 출생하지 않은 경우 등)	622	833.3	858	1071
1인 (유아 1인의 경우 등)	660	875.6	896	1124
2인 (유아 1인 + 수입103만엔 이하의 배우자의 경우 등)	698	917.8	934	1162
3인 (유아 2인 + 수입103만엔 이하의 배우자의 경우 등)	736	960	972	1200
4인 (유아 3인 + 수입103만엔 이하의 배우자의 경우 등)	774	1002	1010	1238
5인 (유아 4인 + 수입103만엔 이하의 배우자의 경우 등)	812	1040	1048	1276

※ 부양친족등의 수는, 소득세법상의 동일생계배우자 및 부양 친족 (양부모등에 위탁되어진 아동이나 시설에 입소되어진 아동을 제외합니다.이하, 「부양친족등」 라고 합니다.) 또는 부양친족등이 아닌 아동으로 전년도 12월31일에 생계를 유지한 수를 말합니다.  
 부양친족등의 수에 맞는 한도액 (소득액 기준) 은, 1인에 대해 3 8 만엔 (부양친족등이 동일생계배우자 (70세이상인자에 한합니다.) 또는 노인부양친족인 경우에는 4 4 만엔) 을 가산한 액수로 됩니다.

※ 「수입액의 기준」 은, 급여수입만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 실체는 급여공제나 의료비공제, 잡손공제(특정의 계정과목에 해당하지 않는공제) 등을 공제한후의 소득액으로 소득제한을 확인합니다.

**연속되는 다음페이지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 (2) 현황서류의 생략에 대하여

**ア : 츠쿠바시에서는 2022년부터 현황을 공부(법령규정상부) 등으로 확인하므로, 현황서류의 제출을 원칙불필요로 합니다.**

**※단, 이하의 분은 계속하여 현황서류를 제출이 필요합니다**

- ① 배우자로부터의 폭력등으로 주민표 주소지가 츠쿠바시와 동일하지 않은 분
- ② 츠쿠바시에 호적이나 주민표가 없는 아동을 양육하시는 분
- ③ 이혼 협의중으로 배우자와 별거하고 계신 분
- ④ 법인으로서의 미성년후견인, 시설등의 수급자인 분
- ⑤ 그외, 제출의 안내가 있던 분

**イ : 이하의 변경사항이 있었던 분은 해당지역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아동을 양육하지 않게 된 이유로 지급대상인 아동이 없어진 경우
- ② 수급자나 배우자, 아동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의 전출을 포함)
- ③ 수급자나 배우자, 아동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 ④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배우자가 생기게 되는 경우, 또는 아동을 양육해 오던 배우자가 없어진 경우
- ⑤ 수급자의 가입연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수급자가 공무원이 되었을 경우를 포함)
- ⑥ 이혼협의중의 수급자가 이혼을 했을 경우
- ⑦ 국내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으로 해외에 살고 있는 부모로부터 「부모지정자」의 지정을 받는 경우

### 공무원인 분에게 !!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처로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하의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현주소의 시청과 근무처에 신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이 된 경우
- 퇴직등에 의해 공무원이 아닌 경우
- 공무원이지만, 근무처의 관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이 늦어지면, 원칙적으로 늦어진 기간의 월분의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츠크바시청 어린이정책과 어린이복지계  
(こども政策課 こども福祉係)  
電話 : 029 (883) 1111